

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323
------	-----

2022. 12. 21.
기획경제위원회

I.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10월 17일, 서울특별시장
- 나. 회부일자 : 2022년 10월 21일
-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15회 정례회】
 - 제7차 기획경제위원회(2022.12.21.)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수정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정수용 기획조정실장)

1. 제안이유

- 서울시 조례 내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등을 순화하고 민선 8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개편사항을 일괄 정비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와 입법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어려운 한자어 등의 용어를 순화함.
-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개편사항을 정비함.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조례안의 개요

- 서울특별시 조례에 일부 남아있는 어려운 한자어·일본식 용어와 조직개편으로 미반영된 조문을 일괄 정비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와 입법 효율성을 개선하고자 제출됨.

나. 조례안의 일괄개정 사항

- 법제처는 2006년부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법령에 규정된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는 작업을 추진하여 왔음.
-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와 법제처가 선정한 정비대상 15개의 용어를 순화하고, 민선8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변경 등을 반영하여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 법제처 정비대상 용어 15개 >

용어	정비어	용어	정비어	용어	정비어
구거	도랑	강사료	강의료	용이하게	쉽게
개폐	개정·폐지	통할	총괄	회무	사무
부의	회의에 부치다	잔임기간	남은 임기	수발	접수·발송
절사	버리다	허위	거짓	납골	봉안
감안	고려	입회	참관	쌍방	양쪽

○ 이에 따라 서울시 조례 793건(2022.09.30. 조사일 기준) 중 123건을 대상으로 205개의 조문을 일괄 정비함[참고자료].

- 세부 정비내용으로는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차별적 표현, 권위적 표현에 해당하는 용어순화 159개와 행정기구 개편사항, 관계법령 명칭변경 등 그 밖의 정비사항 46개임.

< 조례안 세부 정비내용 >

구분	유형	내용
용어순화(159)	어려운 한자어(87)	구거 → 도랑 회무 → 사무 허위 → 거짓 쌍방 → 양쪽 절사 → 버리다 용이하게 → 쉽게 개폐 → 개정·폐지 수발 → 접수·발송 부의 → 회의에부치다 잔임기간 → 임기의 남은기간
	일본식 용어(28)	납골 → 봉안 감안 → 고려 입회 → 참관
	차별적 표현(1)	강사료 → 강의료
	권위적 표현(43)	통할 → 총괄
그 밖의 정비(46)	행정기구 개편사항(36)	민선 8기 조직개편에 따른 정비
	관계법령 명칭변경 등(6)	제명, 인용조문, 용어 변경 등
	오탈자 등 경미한 사항(4)	출석을 → 출석으로 등

○ 조례에서 사용하는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용어는 자치법규의 해석과 이해를 어렵게 하므로 쉬운 우리말로 순화하여 정비함으로써 입법 효율성을 확보하고 자치법규에 대한 시민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 다만, “부의”, “감안”, “입회” 등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서 2006년부터 일본식 용어로 지정하여 관리해 왔으나 매년 정비 대상으로 발견되고 있는바, 자치법규 입안 시 사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함.
- 또한, 개정대상 중 2건의 조례는 이미 개정·공포¹⁾되어 삭제해야 하며 기준일 이후 제·개정된 3건은 추가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수정의견 >

조례안	수정안
<p>제4조(「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조제1항제13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p> <p>제5조 ~ 제56조 (생략)</p>	<p><삭제></p> <p>제4조 ~ 제55조 (제정안 제5조부터 제56조까지와 같음)</p>
<p>제57조(「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7조제1항제10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p> <p>제58조 ~ 제81조 (생략)</p>	<p><삭제></p> <p>제56조 ~ 제79조 (제정안 제58조부터 제81조까지와 같음)</p>
<p>제82조(「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8조제1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p>	<p>제80조(「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8조제1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p>

1) 서울시보 제3744호(2021.12.30.), 조례 제8235호 서울특별시 조례 일본식 표현 등 용어 일괄정비 조례(김인제 의원 발의)

<p>제83조 ~ 제123조 (생략)</p> <p><신설></p> <p><신설></p>	<p>제11조제2항제1호가목 중 “허위의 신청”을 “거짓 신청”으로 한다.</p> <p>제23조제2항제1호 중 “허위”를 “거짓”으로 한다.</p> <p>제81조 ~ 제121조 (제정안 제83조부터 제123조까지와 같음)</p> <p>제122조(「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8조제2항제5호 중 “부익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p> <p>제123조(「서울특별시 민간토지 활용 공공주택 건립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민간토지 활용 공공주택 건립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2조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p>
--	--

[참고자료] 정비대상 조례와 조문

조문	정비대상 조례	정비조문	정비내용
제1조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	통할한다 → 총괄한다
		제10조제2항	통할한다 → 총괄한다
제2조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4조제2항	감안하여 → 고려하여
제3조	서울특별시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제4호	부의하는 → 회의에 부치는
제4조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3호	부의하는 → 회의에 부치는
제5조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제5항	허위 또는 거짓증언 → 거짓증언
제6조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	감정노동 종사자의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 감정노동자가 쉽게 갈 수 있는 곳에
제7조	서울특별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제4항	출석을 → 출석으로
		제14조제1항제1호	허위 → 거짓
제8조	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지원 등을 위한 조례	제7조제1호	허위 또는 → 거짓이나 그 밖의
제9조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제14조제2항	감안하여 → 고려하여
제10조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제2호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 하자 책임을 쉽게 구분할 수 있고
제11조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27조제1호	구거(도랑)부지 → 도랑부지

조문	정비대상 조례	정비조문	정비내용
제12조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	제29조제2항	허위 → 거짓
		제29조제3항제2호	허위 또는 → 거짓이나 그 밖의
제13조	서울특별시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5조	감안하여 → 고려하여
제14조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제13조제2항	감안하여 → 고려하여
		제21조제2항제5호	개폐 → 개정·폐지
제15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조제2항	자산관리과장 → 재산관리과장
		제3조제2항	자산관리과장 → 재산관리과장
		제91조제1항제1호 나목	그 밖에 허위서류의 → 그 밖의 거짓서류
제16조	서울특별시 공인 조례	제3조	정보공개정책과 → 정보공개담당관
		제10조제1항	정보공개정책과 → 정보공개담당관
		별지 제2호서식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제17조	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	하도급 부조리에 대한 시민 신고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시민이 하도급 부조리를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제18조	서울특별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호	허위 또는 → 거짓이나 그 밖의
		제8조제5호	허위 → 거짓

조문	정비대상 조례	정비조문	정비내용
제19조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통할한다 → 총괄한다
제20조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제4호	허위사실 → 거짓사실
제21조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제5항	감안하여 → 고려하여
제22조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	허위로 → 거짓으로
제23조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6호	쌍방 → 양쪽
제24조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6조	감안하여 → 고려하여
		제7조제1항	감안하여 → 고려하여
제25조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	통할한다 → 총괄한다
제26조	서울특별시 김포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	제9조	허위 또는 → 거짓이나 그 밖의
제27조	서울특별시 난지도 매립지가스 및 침출수 처리시설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감안하여 → 고려하여
제28조	서울특별시 노동청소년 보호 및 고용 우수업체 선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감안하여 → 고려하여
제29조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제2항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제30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조제5호바목	절사하여 → 버리고
		제84조	감안하여 → 고려하여
제31조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 조례	제12조제1항제1호	허위진술 또는 허위증명서류 → 거짓진술 또는 거짓증명서류

조문	정비대상 조례	정비조문	정비내용
제32조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제4호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 정보에 접근하기 쉽게
제33조	서울특별시 디지털미디어시티 지원 조례	제7조	감안하여 → 고려하여
제34조	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감안하여 → 고려하여
제35조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제15조제1항제3호	허위 또는 → 거짓이나 그 밖의
		제15조제1항제5호	허위 또는 → 거짓이나 그 밖의
제36조	서울특별시 마을관리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제3호	허위 또는 → 거짓이나 그 밖의
		제12조제1항제5호	허위 또는 → 거짓이나 그 밖의
제37조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제5조제2항	용이하게 → 쉽게
제38조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제39조	서울특별시 물류정책위원회 조례	제6조제1항	회무 → 사무
제40조	서울특별시 민간보건의료기관 이용 만성질환자 건강관리 지원 조례	제5조제2항	허위로 → 거짓으로
제41조	서울특별시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제5조제1항	통할한다 → 총괄한다
제42조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7조제1항	감안하여 → 고려하여
제43조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을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의2제2호	허위 → 거짓
제44조	서울특별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제3호	부익하는 → 회의에 부치는
제45조	서울특별시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제5항	허위라는 → 거짓이라는

조문	정비대상 조례	정비조문	정비내용
제46조	서울특별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호	허위 또는 → 거짓이나 그 밖의
제47조	서울특별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8조	감안하여 → 고려하여
제48조	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제15조제4항	쌍방은 → 모두는
제49조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제1항제2호	용이하지 아니한 것으로 → 적합하지 않다고
제50조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제3호	허위 또는 → 거짓이나 그 밖의
제51조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제2호	용이하지 아니한 것으로 → 적합하지 않다고
제52조	서울특별시 서울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	감안하여 → 고려하여
제53조	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제8조제1호	허위 또는 → 거짓이나
제54조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43조제1항제8호	허위로 → 거짓으로
제55조	서울특별시 숙련기술인 육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	감안하여 → 고려하여
제56조	서울특별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	제5조제1항제5호	용이하게 → 쉽게
제57조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	제7조제1항제10호	부 의하는 → 회의에 부치는
제58조	서울특별시 시민영양 기본 조례	제5조제2항	용이하게 → 쉽게
제59조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13조제3항	감안하여 → 고려하여
		제25조제5항	전임자의 잔임 기간 →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
		제28조제6항	강사료 지급기준 → 강의로 지급기준

조문	정비대상 조례	정비조문	정비내용
제60조	서울특별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호	용이한 → 적합한
제61조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제3조제4항	감안하여 → 고려하여
제62조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제5조제2호	허위 또는 →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제13조	허위 그 밖에 → 거짓이나 그 밖에
제63조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4항	허위 또는 → 거짓이나 그 밖의
제64조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	회무를 통할하며 → 사무를 총괄하며
제65조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항제2호	용이한 → 쉬운
		제4조제1항제7호	개폐기능 → 열고 닫는 기능
제66조	서울특별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4항	감안하여 → 고려하여
		제7조제4항제1호	허위 → 거짓
		제7조제4항제2호	허위 → 거짓
제67조	서울특별시 위기 십대여성 지원 조례	제9조제3항	허위 → 거짓
제68조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20조제3항제3호	허위이거나 → 거짓이거나
제69조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제6조제4호	허위 →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제9조	허위나 그 밖에 → 거짓이나 그 밖의
제70조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2조	감안하여 → 고려하여

조문	정비대상 조례	정비조문	정비내용
제71조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6항	감안하여 → 고려하여
		제7조제2항	감안하여 → 고려하여
제72조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	감안하여 → 고려하여
		제13조제1항	허위기재하여 → 거짓기재하여
제73조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제1호	허위 → 거짓이나
제74조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제8조의2제3항	감안하여 → 고려하여
제75조	서울특별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제2조제3호	이동 및 대피가 용이하고 → 쉽게 이동 및 대피를 할 수 있고
제76조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제3항	통할한다 → 총괄한다
제77조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통할한다 → 총괄한다
		제9조제2항	통할한다 → 총괄한다
제78조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통할한다 → 총괄한다
		제8조제3항	회무를 통할한다 → 사무를 총괄한다
제79조	서울특별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4항	전임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조문	정비대상 조례	정비조문	정비내용
제80조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제3항	식별이 용이한 보조표지를 → 보조표지를 잘 보이게
		제14조의2제2항	식별이 용이한 보조표지를 → 보조표지를 잘 보이게
		제25조제4항제1호	용이한 → 쉬운
		제25조제4항제2호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의 발견이 용이한 →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이 잘 보이는
		제25조의2제3항제3호	CCTV감시가 용이하고 → CCTV로 감시하기 쉽고
제81조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7조제4항	쌍방은 → 모두는
		제11조	쌍방 → 양쪽
제82조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8조제1항	감안하여 → 고려하여
제83조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제3호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 하자 책임을 쉽게 구분할 수 있고
		제7조제3항	감안하여 → 고려하여
제84조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	허위 → 거짓
		제11조제3항제2호	허위 또는 → 거짓이나 그 밖의

조문	정비대상 조례	정비조문	정비내용
제85조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6조제4항	허위 또는 → 거짓이나 그 밖의
		제7조	감안하여 → 고려하여
제86조	서울특별시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호	허위, → 거짓이나
		제11조	허위의 → 거짓
제87조	서울특별시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8조제2항	허위공적 → 거짓공적
제88조	서울특별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	제5조제1항	통할한다 → 총괄한다
제89조	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제11조제2항제4호	허위사실이나 → 거짓사실이나
제90조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제7항	허위 → 거짓
		제4조의4제5항	허위 → 거짓
제91조	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	제5조제1항	허위의 → 거짓
제92조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40조	허위 또는 → 거짓이나 그 밖의
제93조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3조	통할하고 → 총괄하고
		제26조 등 30개	통할하며 → 총괄하며
		제124조제6호	개폐 → 개정·폐지
		제127조제7호	개폐 → 개정·폐지
제94조	서울특별시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4호	홍보가 용이하다고 → 홍보에 적합하다고

조문	정비대상 조례	정비조문	정비내용
제95조	서울특별시 홍보매체 시민개방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3호	허위 → 거짓
제96조	서울특별시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감안하여 → 고려하여
		제8조제2항	시민소통담당관 → 홍보담당관
제97조	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제6조제4호	허위 또는 → 거짓이나 그 밖의
		제10조	허위나 그 밖에 → 거짓이나 그 밖의
제98조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26조제2항제5호	정원의 개폐 → 정원의 개정·폐지
제99조	서울특별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	스마트도시정책관 → 디지털정책관
제100조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	기관를 → 기관을
		제18조제2항	제10조 → 제19조
		제18조제4항	업무를 → 업무의
제101조	서울특별시 기반시설설치기금 조례	제7조제1항제1호	공공개발기획단장 → 공공개발기획담당관
		제7조제1항제3호	공공개발기획단장 → 공공개발기획담당관
		제9조제2항	공공개발기획단장 → 공공개발기획담당관
제102조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호	남북협력담당관 → 남북협력과장
제103조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호가목	기획조정실장 → 행정국장
		제7조제2호가목	대외협력담당관 → 대외협력과장
		제7조제2호나목	국제교류담당관 → 국제협력과장

조문	정비대상 조례	정비조문	정비내용
제104조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스마트도시정책관 → 디지털정책관
제105조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5조	주택정책실 도시공간기획과 → 미래공간기획관 도시공간기획담당관
제106조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별표 6	동부·중부·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 동부·중부·서부·북부 공원여가센터소장
제107조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경제정책실장 →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제108조	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	법 제11조 → 제11조
제109조	서울특별시 명예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	시민소통담당관 → 홍보담당관
		제2조제3항	시민소통담당관 → 홍보담당관
		제4조제3항제1호	시민소통기획관 → 홍보기획관
제110조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나목	주민세 재산분 → 주민세 사업소분
제111조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	생활안정금 → 생활지원금
제112조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제12조제2항	도시계획국장 → 디자인정책관
제113조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제3호	시민건강국장 →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제114조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제7조제3항	스마트도시정책관 → 디지털정책관
		제7조제3항제2호	스마트도시정책관 → 디지털정책관
		제11조제2항	스마트도시정책관 → 디지털정책관
		제12조제3항	스마트도시정책관 → 디지털정책관

조문	정비대상 조례	정비조문	정비내용
제115조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	가족담당관 → 아동담당관
제116조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	권익보호담당관 → 업무담당 담당관
제117조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7조제4항	행정국장 → 디지털정책관
제118조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43조	공원녹지사업소 → 공원여가센터
		제43조	공원녹지사업소장 → 공원여가센터소장
제119조	서울특별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제4조제4항	제4조의2 → 제4조의3
제120조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제2항제3호	신성장산업기획관 → 경제정책실장
제121조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제2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 → 소상공인담당관
		제9조제2항제1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 → 소상공인담당관
제122조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시민소통담당관 → 홍보담당관
제123조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제20조제3항제2호	환경에너지기획관 → 환경기획관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수정안요지

가. 수정이유

- 개정대상 중 이미 개정·공포된 조례를 삭제하고, 조례안 제출 이후 제·개정된 사항을 추가 정비함.

나. 수정안의 주요 내용

- 2021년에 이미 개정·공포된 2건의 조례를 삭제함(안 제4조, 안 제57조).
- 조례안 제출 이후 제·개정된 3건의 조례를 추가로 정비함.

VI. 심사결과 : 수정안가결

(재적위원 12명, 참석위원 8명,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323호
----------	---------

제안년월일 : 2022년 12월 21일
제안자 : 기획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 개정대상 중 이미 개정·공포된 조례를 삭제하고, 조례안 제출 이후 제·개정된 사항을 추가 정비함.

2. 수정의 주요 내용

- 2021년에 이미 개정·공포된 2건의 조례를 삭제함(안 제4조, 안 제 57조).
- 조례안 제출 이후 제·개정된 3건의 조례를 추가로 정비함.

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를 삭제하고, 안 제5조부터 안 제56조까지를 각각 안 제4조부터 안 제55조까지로 한다.

안 제57조를 삭제하고, 안 제58조부터 안 제81조까지를 각각 안 제56조부터 안 제79조까지로 한다.

안 제82조를 안 제80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제80조(「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감안하여” 를 “고려하여” 로 한다.

제11조제2항제1호가목 중 “허위의 신청” 을 “거짓 신청” 으로 한다.

제23조제2항제1호 중 “허위” 를 “거짓” 으로 한다.

안 제83조부터 안 제123조까지를 안 제81조부터 안 제121조로 한다.

안 제122조와 안 제123조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제122조(「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5호 중 “부의하는” 을 “회의에 부치는” 으로 한다.

제123조(「서울특별시 민간토지 활용 공공주택 건립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민간토지 활용 공공주택 건립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감안하여” 를 “고려하여” 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조례안	수정안
<p>제4조(「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조제1항제13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p> <p>제5조 ~ 제56조 (생략)</p> <p>제57조(「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7조제1항제10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p> <p>제58조 ~ 제81조 (생략)</p> <p>제82조(「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8조제1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p> <p>제83조 ~ 제123조 (생략)</p>	<p><삭제></p> <p>제4조 ~ 제55조 (제정안 제5조부터 제56조까지와 같음)</p> <p><삭제></p> <p>제56조 ~ 제79조 (제정안 제58조부터 제81조까지와 같음)</p> <p>제80조(「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8조제1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p> <p>제11조제2항제1호가목 중 “허위의 신청”을 “거짓 신청”으로 한다.</p> <p>제23조제2항제1호 중 “허위”를 “거짓”으로 한다.</p> <p>제81조 ~ 제121조 (제정안 제83조부터 제123조까지와 같음)</p> <p>제122조(「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8조제2항제5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p> <p>제123조(「서울특별시 민간토지 활용 공공주택 건립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민간토지 활용 공공주택 건립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2조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p>
<신설>	제122조(「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설>	제123조(「서울특별시 민간토지 활용 공공주택 건립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민간토지 활용 공공주택 건립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및 제10조제2항 중 “통할한다”를 각각 “총괄한다”로 한다.

제2조(「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가
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3조(「서울특별시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4조(「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
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0조제5항 중 “허위 또는 거짓증언”을 “거짓증언”으로 한다.

제5조(「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감정노동 종사자의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를 “감정노동자가 쉽게 갈 수 있는 곳에”로 한다.

제6조(「서울특별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출석을”을 “출석으로”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허위”를 “거짓”으로 한다.

제7조(「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지원 등을 위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지원 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 중 “허위 또는”을 “거짓이나 그 밖의”로 한다.

제8조(「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9조(「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를 “하자 책임을 쉽게 구분할 수 있고”로 한다.

제10조(「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호 중 “구거(도랑)부지”를 “도랑부지”로 한다.

제11조(「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중 “허위”를 “거짓”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허위 또는”을 “거짓이나 그 밖의”로 한다.

제12조(「서울특별시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13조(「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단서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21조제2항제5호 중 “개폐”를 “개정·폐지”로 한다.

제14조(「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 중 “자산관리과장”을 각각 “재산관리과장”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하천관리과장”을 “치수안전과장”으로 한다.

제39조의2제5항 중 “자산관리과”를 “재산관리과”로 한다.

제91조제1항제1호나목 중 “그 밖에 허위서류의”를 “그 밖의 거짓서류”로 한다.

제15조(「서울특별시 공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정보공개정책과”를 “정보공개담당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정보공개정책과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한다.

제14조 중 “허위, 변조”를 “변조”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제16조(「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하도급 부조리에 대한 시민 신고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를 “시민이 하도급 부조리를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로 한다.

제17조(「서울특별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 중 “허위 또는”을 “거짓이나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허위”를 “거짓”으로 한다.

제18조(「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19조(「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4호 중 “허위사실”을 “거짓사실”로 한다.

제20조(「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21조(「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허위로”를 “거짓으로”로 한다.

제22조(「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쌍방”을 “양쪽”으로 한다.

제23조(「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및 제7조제1항 중 “감안하여”를 각각 “고려하여”로 한다.

제24조(「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25조(「서울특별시 김포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김포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허위 또는”을 “거짓이나 그 밖의”로 한다.

제26조(「서울특별시 난지도 매립지가스 및 침출수 처리시설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난지도 매립지가스 및 침출수 처리시설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27조(「서울특별시 노동청소년 보호 및 고용 우수업체 선정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노동청소년 보호 및 고용 우수업체 선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28조(「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단서 중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로 한다.

제29조(「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바목 중 “절사하여”를 “버리고”로 한다.

제8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30조(「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허위진술 또는 허위증명서류”를 “거짓진술 또는 거짓증명서류”로 한다.

제31조(「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 중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를 “정보에 접근하기 쉽게”로 한다.

제32조(「서울특별시 디지털미디어시티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디지털미디어시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33조(「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단서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34조(「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3호 중 “허위 또는”을 “거짓이나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허위”를 “거짓”으로 한다.

제35조(「서울특별시 마을관리소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마을관리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3호 중 및 “허위 또는”을 “거짓이나 그 밖의”로 하고, 같

은 조 제5호 중 “허위”를 “거짓”으로 한다.

제36조(「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용이하계”를 “쉽게”로 한다.

제37조(「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단서 중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로 한다.

제38조(「서울특별시 물류정책위원회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물류정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회무”를 “사무”로 한다.

제39조(「서울특별시 민간보건의료기관 이용 만성질환자 건강관리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민간보건의료기관 이용 만성질환자 건강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허위로”를 “거짓으로”로 한다.

제40조(「서울특별시 민원조정위원회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41조(「서울특별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42조(「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2호 중 “허위”를 “거짓”으로 한다.

제43조(「서울특별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44조(「서울특별시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허위라는”을 “거짓이라는”으로 한다.

제45조(「서울특별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 중 “허위 또는”을 “거짓이나 그 밖의”로 한다.

제46조(「서울특별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단서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47조(「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

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중 “쌍방은”을 “모두는”으로 한다.

제48조(「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제2호 중 “용이하지 아니한 것으로”를 “적합하지 않다고”로 한다.

제49조(「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호 중 “허위 또는”을 “거짓이나 그 밖의”로 한다.

제50조(「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용이하지 아니한 것으로”를 “적합하지 않다고”로 한다.

제51조(「서울특별시 서울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울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52조(「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 중 “허위 또는”을 “거짓이나”로 한다.

제53조(「서울특별시 수도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8호 중 “허위로”를 “거짓으로”로 한다.

제54조(「서울특별시 숙련기술인 육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숙련기술인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55조(「서울특별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5호 중 “용이하게”를 “쉽게”로 한다.

제56조(「서울특별시 시민영양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시민영양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용이하게”를 “쉽게”로 한다.

제57조(「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25조제5항 단서 중 “전임자의 잔임 기간”을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8조제6항 중 “강사료 지급기준”을 “강의료 지급기준”으로 한다.

제58조(「서울특별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

울특별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호 중 “용이한”을 “적합한”으로 한다.

제59조(「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단서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60조(「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 중 “허위 또는”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로 하고, 제13조 중 “허위 그 밖에”를 “거짓이나 그 밖의”로 한다.

제61조(「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허위 또는”을 “거짓이나 그 밖의”로 한다.

제62조(「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회무를 통할하며”를 “사무를 총괄하며”로 한다.

제63조(「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

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제2호 중 “용이한”을 “쉬운”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7호 본문 중 “개폐기능”을 “열고 닫는 기능”으로 한다.

제64조(「서울특별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7조제4항제1호 및 제2호 중 “허위”를 각각 “거짓”으로 한다.

제65조(「서울특별시 위기 십대여성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위기 십대여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허위”를 “거짓”으로 한다.

제66조(「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제3호 중 “허위이거나”를 “거짓이거나”로 한다.

제67조(「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호 중 “허위 또는”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로 한다.

제9조 전단 중 “허위나 그 밖에”를 “거짓이나 그 밖의”로 한다.

제68조(「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69조(「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항 및 제7조제2항 중 “감안하여”를 각각 “고려하여”로 한다.

제70조(「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허위기재하여”를 “거짓기재하여”로 한다.

제71조(「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1호 중 “허위”를 “거짓이나”로 한다.

제72조(「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3항 후단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73조(「서울특별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이동 및 대피가 용이하고”를 “쉽게 이동 및 대피를 할 수 있고”로 한다.

제74조(「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75조(「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2항 중 “통할한다”를 각각 “총괄한다”로 한다.

제76조(「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회무를 통할한다”를 “사무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77조(「서울특별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전임위원의 잔임 기간으로”를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로 한다.

제78조(「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및 제14조의2제2항 중 “식별이 용이한 보조표지를”을 각각 “보조표지를 잘 보이게”로 한다.

제25조제4항제1호 중 “용이한”을 “쉬운”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단서 중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의 발견이 용이한”을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이 잘 보이는”으로 한다.

제25조의2제3항제3호 중 “CCTV감시가 용이하고”를 “CCTV로 감시하기 쉽고”로 한다.

제79조(「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쌍방은”을 “모두는”으로 한다.

제11조 중 “쌍방”을 “양쪽”으로 한다.

제80조(「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11조제2항제1호가목 중 “허위의 신청”을 “거짓 신청”으로 한다.

제23조제2항제1호 중 “허위”를 “거짓”으로 한다.

제81조(「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를

“하자 책임을 쉽게 구분할 수 있고”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82조(「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허위”를 “거짓”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허위 또는”을 “거짓이나 그 밖의”로 한다.

제83조(「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제6조제4항 단서 중 “허위 또는”을 “거짓이나 그 밖의”로 한다.

제7조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84조(「서울특별시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호 중 “허위,”를 “거짓이나”로 한다.

제11조 전단 중 “허위의”를 “거짓”으로 한다.

제85조(「서울특별시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28조제2항 중 “허위공적”을 “거짓공적”으로 한다.

제86조(「서울특별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87조(「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4호 중 “허위사실이나”를 “거짓사실이나”로 한다.

제88조(「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허위”를 “거짓”으로 한다.

제4조의4제5항 중 “허위”를 “거짓”으로 한다.

제89조(「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허위의”를 “거짓”으로 한다.

제90조(「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 중 “허위 또는”을 “거짓이나 그 밖의”로 한다.

제91조(「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통할하고”를 “총괄하고”로 한다.

제26조, 제29조, 제32조, 제35조, 제38조, 제42조, 제45조, 제48조, 제51조, 제54조, 제56조제3항, 제58조, 제65조, 제69조, 제72조, 제75조, 제78조, 제81조, 제84조, 제87조, 제90조, 제93조, 제96조, 제99조, 제102조, 제105조, 제111조, 제114조, 제117조 및 제120조 중 “통할하며”를 “총괄하며”로 한다.

제124조제6호 및 제127조제7호 중 “개폐”를 각각 “개정·폐지”로 한다.

제92조(「서울특별시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호 중 “홍보가 용이하다고”를 “홍보에 적합하다고”로 한다.

제93조(「서울특별시 홍보매체 시민개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홍보매체 시민개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3호 중 “허위”를 “거짓”으로 한다.

제94조(「서울특별시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시민소통담당관”을 “홍보담당관”으로 한다.

제95조(「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

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호 중 “허위 또는”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로 한다.

제10조 전단 중 “허위나 그 밖에”를 “거짓이나 그 밖의”로 한다.

제96조(「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5호 중 “정원의 개폐”를 “정원의 개정·폐지”로 한다.

제97조(「서울특별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스마트도시정책관”을 “디지털정책관”으로 한다.

제98조(「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기관를”을 “기관을”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제10조”를 “제19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업무를”을 “업무의”로 한다.

제99조(「서울특별시 기반시설설치기금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기반시설설치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공공개발기획단장”을 “공공개발기획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3호 중 “공공개발기획단”을 “공공개발기획담당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공공개발기획단장”을 “공공개발기획담당관”으로 한

다.

제100조(「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중 “남북협력담당관”을 “남북협력과장”으로 한다.

제101조(「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가목 중 “기획조정실장”을 “행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가목 중 “대외협력담당관”을 “대외협력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나목 중 “국제교류담당관”을 “국제협력과장”으로 한다.

제102조(「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스마트도시정책관”을 “디지털정책관”으로 한다.

제103조(「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주택정책실 도시공간기획과”를 “미래공간기획관 도시공간 기획담당관”으로 한다.

제104조(「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수임기관란의 “동부·중부·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을 “동부·중부·서부·북부공원여가센터소장”으로 한다.

제105조(「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경제정책실장”을 “노동·공정·상생정책관”으로 한다.

제106조(「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법 제11조”를 “제11조”로 한다.

제107조(「서울특별시 명예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명예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시민소통담당관”을 “홍보담당관”으로 각각 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시민소통기획관”을 “홍보기획관”으로 한다.

제108조(「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중 “주민세 재산분”을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한다.

제109조(「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생활안정금”을 “생활지원금”으로 한다.

제110조(「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도시계획국장”을 “디자인정책관”으로 한다.

제111조(「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3호 중 “시민건강국장”을 “노동·공정·상생정책관”으로 한다.

제112조(「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스마트도시정책관”을 각각 “디지털정책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스마트도시정책관”을 “디지털정책관”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스마트도시정책관”을 “디지털정책관”으로 한다.

제113조(「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가족담당관”을 “아동담당관”으로 한다.

제114조(「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권익보호담당관”을 “업무담당 담당관”으로 한다.

제115조(「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행정국장”을 “디지털정책관”으로 한다.

제116조(「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 본문 중 “공원녹지사업소”를 “공원여가센터”로, “공원녹지사업소장”을 “공원여가센터소장”으로 각각 한다.

제117조(「서울특별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제4조의2를”을 “제4조의3을”로 한다.

제118조(「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3호 중 “신성장산업기획관”을 “경제정책실장”으로 한다.

제119조(「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9조제2항제1호 중 “소상공인정책담당관”을 각각 “소상공인담당관”으로 한다.

제120조(「서울특별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시민소통담당관”을 “홍보담당관”으로 한다.

제121조(「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제2호 중 “환경에너지기획관”을 “환경기획관”으로 한다.

제122조(「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5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123조(「서울특별시 민간토지 활용 공공주택 건립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민간토지 활용 공공주택 건립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